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791

발의연월일: 2025. 6. 13.

발 의 자:김 건·박충권·이헌승

이성권 • 박덕흠 • 윤상현

김용태 · 김기웅 · 인요한

최보윤 · 김태호 · 김장겸

최수진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문학번역원에서는 우수 한국문학 작품을 선정하여 번역 및 출판, 해외 진출 등 한국문학의 현대화 및 세계화를 지원하고 있음.

최근 한국문학의 번역 분야에서 인공지능(AI) 활용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는 한국문학의 세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한국문학번역원 사업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한국문학번역원 사업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한국문학과 관련된 사업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최근 한류의 세계적 확산 추세 속 에서 한국문학의 세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제6호 신 설).

법률 제 호

문학진홍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한국문학과 관련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사업 지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한국문학번역원) ①・②	제13조(한국문학번역원) ①・②
(생 략)	(현행과 같음)
③ 한국문학번역원은 다음 각	③
호의 사업을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u><신 설></u>	6. 한국문학과 관련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사업 지원
<u>6.</u> (생 략)	<u>7.</u> (현행 제6호와 같음)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